

ESG위원회규정

A006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적용범위

제 3조 권한

제 2 장 구 성

제 4조 구성

제 5조 위원장

제 3 장 회 의

제 6조 개최

제 7조 소집권자

제 8조 소집절차

제 9조 결의방법

제 10조 부의사항

제 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 12조 의사록

제 13조 간사

제 14조 전담 상설조직

제 15조 규정의 개폐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1. 위원회는 적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적(Social)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10조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ESG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위원회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는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를 통해,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총원하며, 이 경우 총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

1.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제6조 (개최)**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정기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소집권자)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위원회를 열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위원의 수에서 제외 한다.

제10조 (부의사항)

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ESG 전략 및 정책의 수립
2.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및 정책의 수립
3. 제1항 내지 제2항의 전략 및 정책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의 검토 및 관리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ESG 관련 사항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 (간사)

1.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전담 상설조직)

1. 위원회는 회사의 ESG경영을 촉진하고, ESG에 관한 다양한 쟁점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보좌할 전담 상설조직을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전담 상설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